



안용복 ‘진술’에 대한 새로운 검증

『안용복 ‘진술’에 대한 새로운 검증』

정영미 저, 2020, 동북아역사재단

김병렬 국방대학교 명예교수

우리 역사에 안용복 같은 인물은 안용복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안용복은 1693년과 1696년 두 번에 걸쳐 일본을 다녀왔다. 안용복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본인들에 의해 강제로 도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1693년은 논외로 하고, 당시 허가 없이 무단으로 외국에 갈 경우 사형 등의 중죄로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무리하게 도일을 했던 1696년의 행동은 여러 가지로 의문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용복과 관련된 논문이 수다하게 발표되었으며, 독도와 관련된 모든 단행본 속에는 반드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안용복의 활동사항이 들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안용복이라는 이름으로 발간된 책만 해도 상당한데 대표적으로 『안용복』(지성인), 『대조선인 안용복』(늘푸른 소나무), 『한국인이 기억하는 안용복』(지성인), 『일본이 기억하는 안용복』(지성인), 『독도와 안용복』(충남대 출판부), 『안용복과 죽도일진』(경인문화사), 『안용복과 원록각서』(한국학술정보), 『안용복의 도일활동과 국제법』(책과 사람들), 『안용복과 울릉도 독도』(교우미디어), 『조선의 밀사 안용복』(문사철), 『문학, 독도 그리고 안용복』(지성인), 『우리 땅 독도를 지키는 안용복』(산수야), 『울릉도를 지키는 안용복』(상상) 등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 일전에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 정영미 박사로부터 『안용

북 '진술'에 대한 새로운 검증』(동북아역사재단)이라는 책자를 우송받았다. 책을 펼쳐보기 전까지는 전술한 종류의 그저 그런 책 중 하나려니 생각했다. 하지만 책을 보내준 정 박사의 성의를 생각해서 목차만이라도 보아야겠다고 훑어보다가 점점 흥미를 느껴 단숨에 본문의 마지막 쪽까지 읽게 되었다.

이 책은 크게 '울릉도 쟁계와 안용복', '안용복 진술에 대한 새로운 검증' 항목으로 나뉘어 집필되었는데, 울릉도 쟁계와 안용복은 '조선인 납치사건과 울릉도 쟁계의 시작', '울릉도 쟁계의 전개와 남구만', '울릉도 쟁계의 종결과 안용복'으로 나뉘어져 있고, 안용복 진술에 대한 새로운 검증은 '안용복 진술과 독도', '안용복은 에도에 가서 관백의 서계를 받았는가?', '안용복은 왜 일본에 갔을까?', '안용복이 지킨 독도' 순으로 되어 있다. 모든 내용이 훌륭했지만 특히 '안용복은 에도에 가서 관백의 서계를 받았는가?' 부분은 백미에 해당되었다. 이 책은 일반적인 단행본이라기보다는 의미 있는 학술 논문 모음집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독도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전체를 읽지 않고 필요한 항목만 참고해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용복의 신상

1693년에 안용복과 함께 붙잡혀 갔던 박어둔의 호적부는 발견되었지만 안용복의 호적부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안용복의 정확한 신상을 현재로서는 알기가 어렵지만 다행스럽게도 그가 두 번에 걸친 도일 시 차고 갔던 호패의 내용을 일본인들이 모두 기록으로 남겨 놓았기 때문에 어렵פות이 짐작은 할 수 있다. 일본인들의 기록에 의하면 1차 도일 때는 동래부(東萊府)에 거주하는 사노비(私奴婢) 용복(用卜)이라는 호패를 차고 갔었고, 2차 때는 통정대부 안용복(通政大夫 安龍福)이라는 호패를 차고 갔었다. 2차 도일 시 차고 갔던 호패에 갑오년 출생(1654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1 박어둔의 호적부에 의하면 그는 염간(鹽干)이라는 천역(賤役)을 하고 사비(私婢) 천시금(千時今)과 혼인했지만, 호적부상 증조부는 가선대부, 조부는 통정대부, 부는 정병(正兵), 외조부는 정노위(定虜衛)였다.

보아서 1693년 당시 40세였음을 알 수 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 호패를 찰 수가 있었을까?

1차 도일 시 차고 갔던 호패에 안용복의 신장이나 안면의 특징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안용복은 천민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2차 도일 시에는 어떻게 양반(통정대부)의 호패를 차고 갔을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균역을 마친 안용복이 일정한 돈을 내고 통정대부 직첩을 샀을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안용복이 모종의 임무를 가지고 도일했기 때문에 임무에 맞게 신분을 위장했을 가능성이다.

우선 안용복은 균역을 마침으로써 천민(私奴)을 면하고 상민(常民)이 될 수 있었다. 당시에는 납속제도(納粟制度)가 있었다. 조선 중기에 이르러 관직은 제한되고 양반은 늘어났기 때문에 납속제도를 만들어 양반들에게 일정한 돈을 받고 직첩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현종 2년에 양반들에게 판매하는 직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진흥ള에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감가모속별단(減價募粟別單)을 제정하여 그전보다 조금 싸게 직첩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양반들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양반들보다 10석 정도 비싼 값에 상민들에게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공명첩(空名帖)은 흉년으로 판매가 잘 안 될 경우 지방관들이 판매를 늘리기 위해 고심을 해야 할 정도였다. 따라서 안용복이 도일을 할 때는 감가모속별단이 제정된 지 30여 년이 지난 시점이었고, 숙종 16년(1690)년에는 특별히 판매를 더욱 늘리기 위해 기준 연령을 낮추고 공명첩의 가격을 더 낮추는 별단을 제정했기 때문에 왜관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했던 것으로 보이는 안용복은 농사를 짓던 다른 사람들보다 용이하게 공명첩을 구하고 이에 맞는 호패를 만들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판매되었던 직첩은 주로 통정대부, 가선대부, 절충장군이었는데 이 중 37%가 통정대부였다. 이러한 품계 외에 추가로 돈을 납부하면 동지나 첩지 등의 직첩도 받을 수 있었기² 때문에 안용복이 통정대부, 동지를 칭한 것은 사칭(詐

2 첩지첩 40석 내지 8석, 동지첩 50석 내지 10석이었다. 권오엽, 2011, 『일본 고문서의 독도 岡嶋正義古文

稱)이라기보다는 납속직(納粟職)을 칭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는 1차 도일 시 동행했던 박어둔이 비록 천한 일(鹽干)을 하고 있었지만 호적부에 증조부는 가선대부, 조부는 통정대부, 부는 정병(正兵), 외조부는 정노위(定虜衛)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사회 전체에 만연한 현상으로 보인다.

특히 2차 도일 후 조정에서 안용복의 죄상을 논할 때 도일한 것만 따졌지 신분을 사칭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보아도 위조보다는 납속제도에 의해 직첩을 산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안용복이 실질적으로 배의 선장 노릇을 하면서 상승(商僧)으로 의승수군(義僧水軍)에 속했던 뇌헌이나 선비인 이인성 등을 지휘했던 것으로 보아 단순히 위조호패라고만 볼 수는 없으며 안용복의 복장(靑帖裏)도 수궁이 된다.

한편 안용복이 모종의 임무를 가지고 도일했기 때문에³ 임무에 맞는 호패를 만들어 차고 갔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하겠다.

안용복은 문자해독 능력이 있었을까

당시 일본인들이 안용복을 통역사(通使)라고 기록했던 것으로 보아 안용복이 일본어는 구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용복이 일본어를 읽고 쓸 줄 알았는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기록이 없다. 오히려 그러한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많다. 즉 글은 모르고 말만 할 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문을 읽고 쓸 줄 알았는가에 대해서도 정확한 기록이 없다. 오히려 이인성에게 소장물 쓰게 했다고 말한 기록이나, 현지에 이인성이 쓴 글은 몇 점 전해져 오지만 안용복이 썼다는 것은 단 한 점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원록각서」에 나오는 한자명 이름의 오자 등을 보면 오히려 한문 해독 능력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성호 이익은 안용복이 한문과 일본어에 능통했다고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섣뜻

書』, 선인, 237쪽.

3 남구만의 밀사라는 일부 의견도 있다.

동의하기 어렵다.

안용복이 1차 도일 시 패용했던 호패에 의하면 그는 사노(私奴)였고, 거주지는 좌자천 1리였다. 좌자천 1리는 지금의 부산시 동구 좌천동이다. 이곳에는 부산진성이 있고, 수군 만호당 등 군사시설이 있었다. 안용복은 능로군으로 복무를 했기 때문에 이곳에 거주하고 있었다. 2차 도일 시에는 군역을 마쳤기 때문에 사노를 면하고 상민(常民)이 되어 있었으며, 1차 도일 이전에 이미 동해안을 항해하는 운송업자로 활동하면서 왜관에 물품을 납품하고 있었다.

당시 초랑 왜관이 좌천동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용복은 납품을 이유로 왜관에 드나들며 나름대로 일본말을 배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노였던 안용복은 한문을 읽거나 쓸 줄은 몰랐지만 일본말은 듣거나 할 줄 알았다. 물론 이 경우에도 물품 거래와 관련된 쉬운 말만 할 줄 알았지 어려운 말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곳곳의 일본 측 기록에 안용복이 통사로 기록되어 있지만 안용복이 붓은 잡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2차 도일 시 돛토리에서는 안용복 일행과 시종일관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며칠 전 오키에서는 잘 통했던 말이 며칠 후 바다 건너 돛토리에서는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관련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돛토리에서도 안용복과 조사자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가신과 유학자, 지지부교(寺社奉行) 등 여러 사람이 안용복 일행을 만나 일부는 대화로 일부는 필담으로 의사소통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왜 말이 통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나올까? 지금도 통역을 할 때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거나 내게 불리한 내용은 일부러 빼놓고 통역을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말이 통하지 않았다는 기록은 무언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말이 통하지 않았다고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 그 이유가 무

4 『邊例集要』 속증 20년 8월조.

엇일까?

원래 조선과 일본은 모든 교류를 대마도를 통해서만 하도록 약조가 되어 있었고, 일본에서는 모든 외국과의 교류를 나가사키에서만 하도록 국법이 되어 있었다. 따라서 돗토리에서 안용복과 어떠한 의사소통을 하면서 안용복의 소송을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는 결과적으로 돗토리가 국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 추후에 나가사키나 대마도에서 이를 빌미로 막부에 돗토리의 처벌을 요구하게 되면 돗토리의 관계자들은 사형이라는 중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돗토리 관계자들은 실제로 대화나 필담을 통해 모든 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으면서도 의사소통이 안 되었다라고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죽도기사(竹島紀事)』를 보면 다음과 같이 그 이유가 명확히 나온다.

11인 중에는 신년(申年)에 죽도에 온 조선인 안히차쿠가 여러 가지 일을 잘 알고, 대체로 일본어를 말합니다. 소송의 건은 그쪽(대마번)에 관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카가노카미 님에게 그쪽 대마번의 일이 어떻다고 말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말이 통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카가노카미 님이 필담으로 알아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는지, 필담으로 알아보면 될 것을 필담은 하지 않았는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필담을 하면 소송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필담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찌 되었든 그쪽 대마도의 일을 이것저것 말하고 있습니다.⁵

이 기록을 보면 안용복이 대마도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했는데, 그

5 拾一人之内、先年竹島江參り候朝鮮人アンヒチャク諸事案内をも能尊、大形日本言葉を申候、訴訟之儀者其元様之儀二而御座候様聞へ申候、乍去加賀守様江者其元様之儀何角と申候とハ難申上候付、何事も言葉通し不信候由申上候、就夫加賀守様御意被成候ハ、筆談二而埒明可申儀候、筆談者不仕候哉与被仰候付、筆談を仕候而者訴訟之儀を受込候同前二御座候故、筆談不仕候旨申上候 兎角其元様之儀何角と申候 (『竹島紀事』元祿 9年 6月 23日)。

러한 것들이 막부로 알려지게 되면 곤란한 일이 생길 것 같아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안용복이 대마도에 대해서 이것저것 말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안용복이 오키도에 도착하면서부터 도해의 목적으로 말했던 호키국에 원하는 것이다.⁶ 대마도에서 관백의 서계를 빼앗겼다는 것, 대마도에서 막부의 명을 빙자하여 울릉도를 차지하려고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조선에서 일본으로 보내는 쌀, 배, 종이 등의 분량을 줄여 재포장 전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 등일 것이다. 특히 대마도의 상품 재포장 즉 쌀은 15두가 1섬인데 대마도에서는 7두를 1섬이라 하고, 배 30척이 1필인데 20척을 1필이라 하고, 종이 1다발을 3다발로 만드는 것⁷ 등이다. 여기서 관백의 서계를 빼앗긴 것은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이고, 울릉도를 차지하려고 농간을 부린다는 것은 1차 도일과 그로 인한 교섭의 내용을 전해 들어 알 수 있는 일이었지만, 대마도가 상품을 재포장하여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안용복이 이렇게 정확히 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안용복이 비교적 규모가 큰 거래를 왜관과 오랜 기간 하고 있었음을 추측케 하는 대목이다.

안용복은 조선 조정에서 파견한 사람이었을까

저자는 명확하게 안용복이 조선 조정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요소요소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권오엽⁸, 최영성⁹, 권정¹⁰ 교수 등에게서도 볼 수 있다.

이 중 권오엽과 최영성 교수는 남구만을 배후로 지명하고 있다. 남구만은

6 伯耆守樑江御斷之義在之罷越申候, 「元祿覺書」.

7 『肅宗實錄』, 肅宗 22年 10月 丙申條.

8 권오엽, 2015, “남구만의 밀사 안용복”, 『일본어문학』 제65집, 437~438쪽.

9 최영성, 2019, 『조선의 밀사 안용복』, 문사철.

10 권정, 2011, “안용복의 울릉도 도해의 배후(동래부사와 부산첨사)”, 『일본어문학』 제55집, 506~524쪽.

숙종 13년(1687)부터 숙종 22년(1696)까지 영의정으로 있으면서 안용복 사건을 최고 책임자의 위치에서 처리한 사람이다.

그는 강토에 대한 의식이 매우 투철했던 사람이다. 고구려의 멸망으로 빼앗긴 만주고토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조선 건국 시 당초의 국경선인 압록강, 두만강만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굳게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의 피폐된 군역제도로는 이러한 일이 어렵기 때문에, '인재의 발굴', '민심의 결속', '군제의 개혁'을 통한 자강만이 강토의 보전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병조판서를 역임한 후 그 경험을 바탕으로, 백성들의 군역부담을 경감시키고자 7조목의 군정획일안(軍政劃一案)을 제시하였고 수시로 다음과 같이 국방 강화를 위한 상소를 했다.

부령 북쪽과 차유령(車輪嶺) 바깥 지역도 두만강 안쪽의 수백 리나 되는 땅이니, 이것 역시 우리 소유임에 틀림없습니다!¹¹

두만강 이북은 지금 비록 다른 나라의 땅이 되었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우리 목조, 익조가 태어나고 생활하던 곳입니다. …요동의 왼쪽(遼左)은 애초 기자(箕子)가 봉토로 받은(受封) 곳이며, 개원현은 옛 부여국과 고구려 시조인 주몽이 활동하던 땅이고, 지금의 개평현은 곧 진한의 옛 토지이니 역시 우리 삼한 중의 하나였습니다!¹²

부령 이북과 삼수 이서 지역 중에서 버렸던 땅을 지켜 국경을 튼튼히 해야 합니다!¹³

저는 국가에서 사군을 버리고 별해진을 설치하여 변경으로 삼은 것을 개탄스럽게 여깁니다!¹⁴

11 「東北邊三事仍進地圖疏」『藥泉集』卷4, 314面.

12 「進盛京地圖兼進北關事劄」『藥泉集』卷10, 825~826面.

13 「咸境道地圖記」『藥泉集』卷28, 2312面.

14 「北巡雜錄」『藥泉集』卷29, 2369~2373面.

남구만은 함경감사시절 갑산-북청-단천-길주로 우회하던 것을 갑산-길주의 직통 도로를 개설하여 전평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함경도의 구석구석을 순시한 후 여진족들이 철수함으로써 비워진 무산 북쪽의 마을우시배(牛乙于施培)에 부(府)를 설치하고, 서가선(西加先), 도곤(都昆), 이시(利施) 등의 지역에 두세 개의 진보(鎭堡)를 설치하여 강방처(江防處)로 삼고, 차유령과 장백산 후면 사이의 전용 도로인 박하천(朴下遷)에 보(堡)를 설치하며, 회령의 풍산(豊山), 부령의 양영(梁永), 무산의 옥연(玉連), 경성의 어유간(魚游澗) 등의 진보(鎭堡)를 폐지하고 후주(厚州)에 도읍을 재설치하며, 여연, 자성, 우예(虞芮), 무창 등 폐사군을 재설치할 것을 건의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여, 국토회복에 대하여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던 당시의 조정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¹⁵

중국에서 삼번(三藩)의 난이 발생하고 대만에서 정성공(鄭成功) 일가의 해적세력이 기세를 떨치자 조선에서는 해적의 침략을 두려워한 나머지 청에게 원조를 요청하는 자문(咨文)을 보내려 했다. 이에 남구만은 득보다 실이 크다며 평소의 소신대로 자강론을 주장하면서, 청에게 원조를 요청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남구만은 특히 축성(築城)이나 수성(守城) 등의 방어전술보다는 친기위(親騎衛)를 활성화하여 해안에 해적이 상륙했을 때 신속하게 기동하여 이를 격퇴시켜야 한다며 공격적인 전술을 강조했다.

이러한 그에게 안용복의 도입로 일본과 울릉도 문제가 발생하자, 쓸모없는 무인도 하나 때문에 일본과 마찰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며 “울릉도는 조선 땅이지만 죽도(竹島)는 일본 땅이다” 따위의 무사안일주의로 대처하려던 민암, 목래선 등의 일처리가 마음에 들 리가 없었다. 그는 예조참판 권해의 명의로 일본에 보냈던 1차 국서를¹⁶ 회수하고 “우리나라 백성이 고기를 잡던 땅은 본시 울릉도로서, 대나무가 나기 때문에 더러 죽도라고도 하는데,

15 보다 자세한 강신업, 1991, “남구만의 국방사상”, 『민족문화』 제14집, 173~186쪽 참조.

16 『肅宗實錄』卷26, 肅宗20年 2月 辛卯條.

이는 곧 하나의 섬을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다. 하나의 섬을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른 상황은 단지 우리나라 서적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귀 대마주 사람들도 또한 모두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수정토록 함으로써 끝내 울릉도를 지킬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사달을 일으킨 안용복을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감사정배(減死定配)토록 하였다.

안용복이 계유년에 울릉도에 갔다가 왜인에게 잡혀 백기주(伯耆州)에 들어 갔더니, 본주에서 울릉도는 영구히 조선에 속한다는 공문을 만들어 주고 증물(贈物)도 많았는데, 대마도를 거쳐서 나오는 길에 공문과 증물을 죄다 대마도 사람에게 빼앗겼다 하나, 그 말을 반드시 믿을 만하다고 여기지는 않았습시다미는, 이제 안용복이 다시 백기주에 가서 정문(呈文)한 것을 보면 전의 말이 사실인 듯합니다. 안용복이 금령(禁令)을 무릅쓰고 다시 가서 사달을 일으킨 죄는 진실로 주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마도의 왜인이 울릉도를 죽도(竹島)라 거짓 칭하고, 강호(江戶)의 명이라 거짓으로 핑계 대어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울릉도에 왕래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려고 중간에서 속여 농간을 부린 정상이 이제 안용복 때문에 죄다 드러났으니 이것은 또한 하나의 쾌사(快事)입니다. 안용복에게 죄가 있고 없는 것과 죽여야 하고 죽이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천천히 의논하여 처리할 것이고, 대마도에 주는 쌀, 배, 종이를 줄이는 자질구래한 일은 다 거론하는 것이 마땅하지 못하나, 울릉도를 변환(變換)하고 속인 일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동래부로 하여금 대마도에 글을 보내 조목조목 힐문해서 명확히 분별하여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들이 만약에 승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 또 글을 보내어 묻기를 “너희가 두 나라 사이에 있으면서 모든 일에 이렇게 신의가 없으니, 안용복이 풍랑에 표류한 잔약한 백성으로서 국서가 없이 스스로 정문한 것은 진실로 믿을 수 없으므로, 조정에서 따로 사신을 일본으로 보내어 그 허실을 살피게 하려는데, 너희는 장차 어떻게 하려는가?” 하면 대마도의 왜인이 반드시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런 뒤에 안용복의

죄를 우리나라에서 그 경중을 따져 처리하고, 울릉도의 일은 왜인이 더 이상 재론하지 못하도록 하면 교활한 왜인이 우리를 시험해 보려는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¹⁷

즉 울릉도는 안용복으로 인하여 발단된 쟁계(爭界)를 남구만이 강단 있게 대처함으로써 반환받을 수 있었으며, 안용복도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조정에서는 안용복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¹⁸ 남구만은 영의정¹⁹ 유상운에게 보낸 편지에서 “안용복의 상소문이 이미 일본에 들어갔으며, 비록 관백에게 글을 바치지지는 않았다 해도 조만간 혹 이로 인하여 사달이 생긴 뒤에는 반드시 안용복을 대질시켜 분별하여야만 일을 끝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안용복을 먼저 처단해서는 안 되니, 우선 구류하고 기다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했다.²⁰

만약 남구만이 안용복의 배후라면 안용복이 죽어야 자신이 배후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죽어야 한다고 할 때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또한 안용복이 귀국한 후에 곧바로 남구만을 찾아가서 대책을 모색하지 않고 강원도 양양으로 가서 체포되었다는 사실도 남구만이 배후였다는 사실과는 부합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안용복의 도일활동은 두만강 북쪽에 있는 땅이든 원양(遠洋)에 있는 섬이든 국토를 보전해야 한다는 남구만의 사상에 부합되며, 말썽을 일으키는 대마도를 배제하고 다른 경로로 일본과 교류를 할 수도 있겠다는 남구만의 구상과 우연히 일치되었을 뿐이지, 남구만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기에는 관련 자료가 너무 빈약하다.

17 『肅宗實錄』卷30, 肅宗22年 10月 丙申條.

18 『肅宗實錄』卷30, 肅宗22年 10月 丙申條.

19 숙종 22년 8월 11일 숙종은 영의정을 남구만에서 유상운으로 교체했다.

20 「答柳相國 丙子十月五日」『藥泉集』卷31.

이러한 남구만 배후설과는 달리 권정 교수는 동래부사와 부산첨사 배후설을 제시했다.²¹

임진왜란으로 단절되었던 국교는 1607년 모두포 왜관의 설치로 재개되었으며, 1609년 기유약조로 무역이 재개되었다. 이후 모두포 왜관이 협소하여 1678년 초량으로 왜관을 이전하게 되었다.

안용복이 1차 도일 후 초량 왜관을 통해 송환될 때 일본은 “죽도에 건넌 어민들에게 이를 지시한 주모자도 있을 것이다. 그 각각에게 죄가 있는 것이므로 처벌을 명해야 할 것이다”²²라는 기록이 있고, 안용복이 2차로 도일한 1696년에 3척의 배로 42인이 울릉도로 갔기 때문에 이는 안용복의 독단활동이 아니라 배후에 동래부사와 부산첨사라는 공권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였다.²³

그런데 권정의 위 논문은 동래부사나 부산첨사를 안용복의 도일활동의 배후로 상정한 것이 아니고, 논문 제목 그대로 울릉도 도해의 배후로만 상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2차 도일의 배후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안용복은 에도에 가서 관백의 서계를 받았는가

저자의 탁월한 판단력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사실 일본의 학자들이 가장 비중을 두고 비판하는 내용도 이 대목이고, 국내 학자들 간에 치열하게 의견이 상충하는 부분도 이 대목이다.

이하의 내용은 이 책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전제한 것이다.

사실 안용복이 ‘에도’에 갔다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커다란 문제가 안 된다.
가서 울릉도·우산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한 ‘관백의 서계’를 받았다고

21 권정, 2011, 앞의 글, 506~524쪽.

22 『竹島紀事』, 元祿6년 12월, 권정, 2011, 앞의 글, 519쪽에서 재인용.

23 권정, 2011, 앞의 글, 523쪽.

한 것이 문제였다. 여기에서 관백은 에도 막부 장군(정대장군)을 가리킨다.²⁴ 즉 안용복이 에도에 갔다는 것은 에도 막부 장군으로부터 울릉도·우산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할 서계를 받았다는 것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시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1693년 조선인 납치 사건이 벌어진 시점에 제기되어 해결을 본 문제다. 다음부터는 이 과정을 잠시 살펴보겠다. (중략)

역시 일본 사료에 따르면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1일, 독도에서 오키섬까지 2일 걸리고 오키섬에서 시마네 항구에는 당일애 들어간다. 이로써 보면 안용복 등이 울릉도에서 7일째 되는 날에 시마네나 돗토리 요나고 등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면 안용복이 ‘이나바성’을 ‘에도’로 오해했다는 쓰시마번 관료들의 지적이 이해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안용복이 ‘에도’에 갔다는 진술은 사건 당시 쓰시마번 관료들의 지적에 의해 오해임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안용복의 2차 진술에서도 확인된다. 안용복의 비변사 진술 등의 2차 진술에서는 1차 진술에서의 ‘오키(도주)’와 ‘에도’가 ‘오키(도주)’와 ‘호키도주(돗토리번주)’로 수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1차 진술 당시에는 안용복도, 조선 조정도 안용복·박어둔이 ‘에도’에 갔던 것으로 믿었다고 본다. 안용복이 ‘에도’에 갔다고 한 말은 다음과 같이 예조 2차 서신에 “도리어 귀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둘을 잡아 가두고 ‘에도’로 보내버렸습니다”와 같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중요한 국가 간의 외교 문서에 이렇게 썼다는 것은 조선 조정도 안용복·박어둔이 ‘에도’에 갔다고 믿었다는 의미다. 이는 안용복의 진술에 어떤 작위성도 없었다는 의미가 된다. 만일 그랬다면 조선 조정이 간파하지 못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중략)

24 관백이란 원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가리키는 관직명이다. 일왕을 보좌하는 관직으로서 1585년 7월 11일 소위 천하통일의 업적으로 히데요시에 수여되었다. 이후 히데요시는 통칭 관백으로 불렸다. 그런데 이 호칭이 안용복 당시에도 일본 최고 권력자의 의미로서 사용되었던 것 같다.

덧붙여 안용복이 왜 '에도'에 갔었다고 믿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언어적 경험'이라는 개념이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즉 일본에서 그가 들은 말로써 자신이 '에도'에 갔다고 오해한 것이다. 그가 들은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 확인할 길은 없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어떤 취지의 말을 들었을지는 추측이 가능하다.

1692년 2월 11일에 요나고를 출발하여 3월 26일에 울릉도에 도착한 무라카와 가의 배는 27일에 '외국배 두 척'에 탄 조선인 30여 명 정도를 보고 그중 '통역'이라고 기록된 사람을 포함한 두 사람을 잡아 배에 태운다. 그리고 그들이 온 섬이 '장군님'이 주셔서 우리가 매년 오고 있는 섬임을 주장하며 조선인의 울릉도 도해를 질책했다.

덧붙여 『죽도고』에도 당시의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원래 이 죽도는 대일본국의 장군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으로 옛날부터 우리가 도해하던 섬이다. 그런데 감히 너희 같은 외국인이 도래하여 우리 일을 방해하였으니 전대미문의 쾌쩍하기 그지없는 일이다”고 표현되어 있다.²⁵

또 1693년에는 오야가 배 선원들은 다음과 같은 논의하에 안용복 등을 잡아갔다고 한다. 즉 “우리 배 사람들이 상의하길, 작년에 조선인들에게 다시 오면 안 된다고 단단히 일러두었는데, 올 봄에 또 우리보다 앞서 와서 일을 방해하니 언어도단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결국엔 반드시 그들에게 우리 영지를 약탈당할 것이다. 이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 일에 대해 위에 자세히 말씀드리고, 막부의 결정을 기다리자”는 논의다.²⁶

오야·무라카와 가 배의 선원들은 '통역'이나 안용복에게 울릉도가 '에도 막부 장군으로부터 자신들이 배령(拜領) 받은 영지'이고 '조선인들의 울릉도 도해는 불법 행위'이며 이 문제에 대해 '에도 막부에 상소'하겠다는 말을 했을 것이다. 지금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죽도'영유권에 대한 말을 한 것이다. 일본 사료를 보면 이들이 귀환하여 안용복과 박어둔을 잡아온 이유를 해명

25 岡嶋正義 文政十一年(1828), 『竹島考 下』, 「朝鮮人初渡來竹島」(『죽도고 상하』, 앞의 책, 205쪽).

26 岡嶋正義 文政11(1828), 『竹島考 下』, 「大谷之船人拿婦朝鮮人」(『죽도고 상하』, 앞의 책, 221쪽).

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 말을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을 들은 안용복은 당연히 ‘죽도’ 영유권 문제로 자신들이 잡혀 온 것이라고 이해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에도’에 가서 ‘장군님’ 앞에 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안용복의 ‘에도’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지는 이로써 짐작할 수 있다. 그는 그가 겪을 것이라고 들은 상황을 가지고 실제 겪은 상황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안용복의 ‘에도’ 운운은 그의 실제 경험이 아닌 ‘언어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술이었다.

덧붙여 그가 일본과 한국에서 울릉도·우산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의 이와 같은 주장은 일본인이 죽도·송도 즉 울릉도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말을 들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신이 잡혀 온 이유가 일본인들의 그런 주장과 연계되어 있음을 이해했을 것이고 당연히 자신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자신이 잡혀 올 만한 이유가 없음을 주장했을 것이다. 그것이 울릉도와 우산도가 조선의 섬이라는 주장이었다고 본다.

조선 조정은 안용복에 대해 미천한 백성이 감히 국가의 대사 즉 영유권 문제에 관여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필자는 안용복이 자신의 일신상의 문제로서 이 문제를 바라보았을 뿐이었다고 본다. 그가 범죄자로서 낯선 외국으로 잡혀간 것, 조선으로 귀환하여 다시 범죄자로서 구류 생활을 한 것 등이 모두 이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자신의 문제로서 울릉도·우산도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하는 다시 저자의 서계에 관한 내용을 요약 전제한 것이다.

안용복의 ‘에도’가 ‘언어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듯 ‘관백의 서계’ 역시 언어적 경험이 바탕이 된 진술이다. ‘실제 경험’으로서의 ‘관백(에도 막부 장군)’은 아마 안용복이 만난 ‘돗토리번의 어느 높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물론 안용복은 실제로 돗토리번에서 누가 높고 누가 낮은 사람인지 모른다. 자기가 만난 사람 중 분위기로 보아 아마 제일 높은 사람일 것이라고 짐작한

사람을 '관백'으로 알았을 것이다.

필자는 이 '관백'이 요나고 성주 아라오 슈리였을 것이라 본다. 안용복이 끌려간 곳은 오야·무라카와 가의 거주지였던 요나고였는데 이곳은 돗토리 번주의 영지 중 일부였으나 '지분테 정치(自分手政治)'라고 하여 요나고 성주가 독자적으로 통치하던 곳이었다. 당시의 성주는 아라오 슈리였다. 안용복과 박어둔은 이곳으로 끌려와 돗토리성으로 보내지기 전까지 오야 집에 구류되어 있었고 아라오 슈리의 조사를 받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안용복이 요나고 성주 아라오 슈리를 '관백'으로 오해했다고 추정된다.

'서계' 역시 '언어적 경험'에서 나온 진술로 보아야 한다. 원래 '서계'란 조·일 간에 주고 받는 외교 문서를 말한다. 그러니 일본에 가기 전까지의 안용복이 이 존재를 알았을 리가 없다. 그리고 이것은 한자로 표기된 조선어이다. 그러니 일본에서 이 '서계'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리 없다. 그렇다면 안용복은 직간접적으로 누군가 '서계'에 준하는 의미가 있다고 해 준 말을 들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조선 조정에 들은 대로 설명을 했고 그것이 한자를 사용하는 관료들에 의해 '서계'라는 단어로 표현된 것이었을 뿐이다.

'서계'의 내용 역시 마찬가지다. 누군가로부터 울릉도와 우산도를 조선의 지경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안용복이 설사 대화가능할 정도의 일본어를 했다고 해도 일본식 한문 문장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 그가 어떤 문서를 받았다고 해도 그것을 읽고 내용을 이해했을 가능성이 없다. 누군가 그것이 '관백의 서계'이며 "울릉도와 우산도를 조선의 지경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라고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로부터 이런 진술이 나왔을 리가 없다.

그러나 '받았다'는 말만큼은 '언어적 경험'이라는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받았다'는 상황은 다른 사람의 설명 없이도 그의 신체적 경험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말 그가 받았는지가 검증되어야 하는데 그에게 그런 문서를 '주었다'고 명기된 일본 사료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현재로서는 사료 대조를 통한 진위여부 확인은 불가능하

다. 다만 ‘관백의 서계’라는 존재가 1696년 2차 도일 시의 안용복의 언행의 전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가 그런 문서를 받았을 것이라는 추정은 해 볼 수 있다.

비변사 진술을 통해 안용복은 오키에서 ‘관백의 서계’를 전제로, 일본인들의 울릉도·우산도 도해를 ‘침범’으로 규정하며 ‘오키 도주’를 질책했다고 한다. 즉 “근년에 내가 이곳에 들어와서 울릉도·자산도 등을 조선(朝鮮)의 지경으로 정하고, 관백(關白)의 서계(書契)까지 있는데, 이 나라에서는 정식(定式)이 없어서 이제 또 우리 지경을 침범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라고 질책했다는 것이다.

돗토리에서도 역시 ‘관백의 서계’를 전제로 울릉도 정계에 대한 ‘쓰시마 도주’의 위법성을 ‘호키 도주’에게 알리고 그를 통해 에도 막부에도 알리려 했다. 도주가 이들이 온 이유에 대해 묻자 답하기를 “전일 두 섬의 일로 서계를 받아낸 것이 명백한데, 대마 도주(對馬島主)가 서계를 빼앗고는 중간에서 위조하여 두세 번 차왜(差倭)를 보내는 등 법을 어겨 함부로 침범하였으니, 내가 장차 관백에게 상소하여 죄상을 두루 말하러 한다.” 하였더니, 도주가 허락하였습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안용복은 오키와 돗토리에서 울릉도·우산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말과 행동을 했는데 ‘관백의 서계’는 그와 같은 언행의 전제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해 안용복이 일본인의 울릉도와 우산도 도해를 ‘침범’으로 규정하여 질책하거나 쓰시마번의 거듭된 봉행차왜 파견을 위법 행위로 에도 막부에 상소하려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관백의 서계’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로써 그가 1693년에 정말 ‘관백의 서계’를 받았음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전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실제의 에도 막부 장군의 서계가 아니다. 안용복이 자기가 들은 말에 의해 ‘관백의 서계’라고 믿었던 문서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추정은 안용복이 그의 진술과 같이 울릉도·우산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이 사실이라는 전제 위에서만 가능하다. 정말 그는 오키와 돗토리에서 울릉도·우산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말을 했을까? 이에 대해서

는 일본 사료 「원록각서」를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원록각서」는 1696년 안용복이 오키에 들어갔을 때 오키 대관(관료)이 파견한 나카세 단에몬과 아마모토 기요에몬이 이들을 조사하고 작성한 보고서다. 이에 따르면 안용복은 일본에서 말하는 죽도(다케시마)와 송도(마쓰시마)가 강원도에 속한 울릉도와 자산도(우산도)라는 말을 했고 말한 대로 적혀있는 「조선팔도 지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안용복이) ‘다케시마를 대나무 섬(竹島)이라고 한다. 조선 강원도 동래부에 울릉도라는 섬이 있다. 이를 대나무 섬이라고도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말한 대로 적혀있는 팔도 지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 ‘마쓰시마(松嶋; 독도)는 앞서 말한 도(道)에 있는 자산(子山)이라고 하는 섬이다. 이를 마쓰시마라고 한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팔도 지도에 적혀 있었습니다.”라고 한 것이다. (중략)

또 안용복은 오키 대관의 가신들에게 그들이 돛토리번주에게 ‘담판’ 지을 일 또는 ‘소송’할 일이 있어서 간다고 밝혔다. 즉 “우리 배에는 열한 명이 있는데 (우리는) 호키(돛토리번 영지)에 가서 돛토리의 호키님(돛토리번주)과 담판 지을 일이 있어 건너왔다. 순풍을 타지 못해 이곳에 들르게 되었다. 순풍이 부는 대로 호키로 갈 것이다”고 한 것이다.

한편 소송 내용에 대해 적어 준다고 하였으나 이 말은 지켜지지 않았다. “21일의 배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써서 보여준 서한의 내용과 이번의 소송에 대한 내용을 합쳐 장문의 초안을 쓰고 그 내용을 보여 주기로 했지만, 22일 상륙해서는 (그들의) 논의가 바뀐 듯합니다. 그러나 앞서의 문서로서 일의 전말을 대강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안용복이 울릉도와 우산도를 일본의 죽도와 송도에 비정한 지도를 가지고 돛토리번주에게 소송을 하러 간 것은 사실이다. 비록 오키에서 소송 내용에 대해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사실만으로 그가 울릉도·우산도 영유권을 주장하려 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조선팔도지도」는 쓰시마번에 빼앗긴 ‘관백의 서계’ 대용이었을 것이다. 안용복 입장에서 ‘관백의

서계'는 에도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우산도(자산도) 등이 조선의 지경'이라는 것을 담보 받은 문서였다. 이것을 쓰시마번주에게 빼앗겼으니 돗토리번주에게 자신의 말과 행동의 정당성을 입증할 다른 근거가 필요했을 것이다. 「조선팔도지도」는 그 용도로 준비해서 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구만 역시 그가 '관백의 서계'를 받았음을 인정했다. 안용복이 비변사에서 진술을 한 후 조선 조정에서는 안용복과 그 일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한 논의가 있었다. 대체로 안용복이 나라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외국에 가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는데 남구만과 윤지원만은 입장이 달랐다. 이때 남구만이 한 말을 보면 그 역시 처음에는 안용복이 '관백의 서계'를 받았다는 말을 믿지 않았으나 그가 2차 도일을 감행한 것을 보고 믿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략) 아울러 그가 돗토리에 가서 돗토리번주를 만났는지 만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할 것 같다. 가와카미는 안용복이 돗토리번주를 만났을 리가 없다고 한다. "안용복이 돗토리에 체류하고 있던 기간 중 번주는 에도에 있었다. 그가 귀성한 것은 7월 19일이다."는 것이다. 돗토리번 『공장』을 보면 1696년 7월 19일 기록에 "번주님께서 오늘 오후 1시쯤 귀성하셨다. 가신들 모두 정해진 곳으로 마중 나갔다."고 되어 있으니 돗토리번주가 에도에서 돗토리성으로 귀성한 것은 7월 19일이 맞다.

그러나 그래서 안용복을 만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때 짬 안용복 일행은 고잔이케 아오시마라는 곳에 세운 움막에 억류되어 있었다. 안용복이 돗토리를 떠난 것은 8월 6일이다. 즉 돗토리번주는 안용복이 아직 돗토리에 있을 때 돌아온 것이고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다.

안용복이 돗토리번주를 만났음은 다음과 같은 진술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그가 돗토리번주의 동의하에 에도 막부에 상소하려고 했으나 쓰시마번주의 요청에 따라 중단되었다는 진술이다. (중략)

이 진술은 안용복이 알 수가 없는 몇 가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먼저 소 요시자네가 섭정이 되어 울릉도 쟁계를 담당했다는 사실관계가 바

탕이 되어 있다. 제1부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1694년 11월 16일 제4대 쓰시마번주 소 요시쓰루가 죽고 그의 동생 소 요시미치가 제5대 번주로 취임한다. 그리고 그들의 부친이며 제3대 번주였던 요시자네가 요시미치의 섭정이 되어 울릉도 쟁계를 담당하게 된다. 이와 같은 쓰시마번의 내부 상황을 조선의 하층 계층 사람이었던 안용복이 파악하고 있었을 리가 만무하다. 그럼에도 '쓰시마도주의 아버지'라고 하여 소 요시자네가 섭정이 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도주 아버지가 간청하여 (중략) 관백에게 품정하지는 못하였으나”라고 한 진술은 요시자네가 안용복의 상소를 막았다고 하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진술이다. 안용복 일행이 돛토리에 온 것을 안 에도 막부는 그들을 나가사키로 보내서 하고 싶어 하는 말을 하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을 돛토리에서 바로 조선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요시자네의 건의를 받아들여 그 건의대로 돛토리번주에게 지시를 한다. 그 결과 안용복 일행이 돛토리에서 추방되어 바로 양양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안용복이 에도 막부에 상소를 하지 못하고 돌아온 배경에는 쓰시마번의 관여가 있었다. 그러나 이 사실 역시 안용복이 알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에도막부에의 상소가 중지된 이유를 안용복은 쓰시마번주와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다.

그는 에도 막부에의 상소가 중지된 이유를 요시자네의 ‘간청’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상)소를 올리면 내 아들이 반드시 중한 죄를 얻어 죽게 될 것이니 올리지 말기 바란다.”와 같이 자기 아들에게 해가 미칠 것을 염려한 쓰시마번주가 안용복의 상소를 막아달라는 ‘간청’을 해 와서 중지했다는 것이다. 이는 진짜 그런 일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안용복이 그렇게 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안용복은 쓰시마번주의 ‘간청’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에도 막부에 상소하는 것을 단념했다고 했다. 그러나 사실은 쓰시마번주의 관여로 ‘에도 막부’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진술에는 안용복이 알 수가 없었던 ‘죽도 도해 금지령’의 존재가 나타나 있다. 요시자네는 에도 막부가 ‘죽도 도해 금지령’을 내린 것에

대해 조선 조정에 알리기 전에 돛토리번 주민이 알지 못하게 해달라고 에도 막부에 건의했다. 그리고 에도 막부는 이 건의대로 돛토리번주에게 지시했다. 이에 이 지령이 아라오 슈리에게 전달되어 다시 오야·무라카와 가에 내려진 것은 1696년 8월 1일이었다.²⁷ 즉 안용복이 돛토리번주를 만났을 7월 시점에서 이 지령에 대해 아는 돛토리 주민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당연히 안용복도 몰랐을 것이다. 그럼에도 “두 섬은 이미 너희 나라에 속하였으니”와 같이 ‘죽도 도해 금지령’을 연상시키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안용복의 진술이 그가 알 수가 없는 정보에 입각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안용복이 돛토리번주 또는 돛토리번의 어떤 고위 관료를 만나 대담을 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번주 교체 등의 쓰시마번의 내부 사정이나 안용복의 2차 도일에 대한 소 요시자네의 움직임, 특히 ‘죽도 도해 금지령’의 존재 등은 돛토리번주 아니면 로주 등 고위 관료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안용복은 누군가에게 듣지 않으면 절대로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글을 마치며

위에 인용한 내용은 한일 간에 논쟁이 되고 있는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의 학자들이 가장 집요하게 공격하는 ‘안용복이 과연 에도에 가서 관백의 서계를 받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가장 명쾌하게 합리적인 이성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안용복이 에도에 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2차 도일 후 이미 안용복도 알고 있었고 안용복을 조사한 남구만도 알고 있었다.²⁸ 따라서 이제 와서 안용복이 에도에 다녀왔는지 여부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다.

27 鳥取藩『控帳』元祿 九年(1696) 八月 朔日 기사.

28 『肅宗實錄』 卷30, 肅宗22年 10月 丙申條.

한편 관백의 서계를 받았는가는 직접 에도에 가지 않고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지 않았다고 하여 받았을 리가 없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 저자는 언어적 경험과 실제 경험이라는 가설을 이용하여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어떤 사실에 대한 기억을 언어적 경험과 실제 경험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한 저자는 오랫동안 계속되어온 한일 간의 논쟁을 해결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용복이 에도에 갔다가 왔느냐 관백의 서계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당시 안용복이 처해졌던 환경이나 안용복이 일본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구사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충분히 착각할 수 있는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에도에 다녀왔다는 문제는 당시에 이미 조선이나 대마도에서 진위가 가려질 수 있었다. 이제 관백의 서계 문제도 저자의 연구로 규명이 되었다고 보여진다.

사실이 이러한 데도 “안용복이 에도에 가지도 않았는데 갔다 왔다고 하고, 관백의 서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모면해 보고자 하는 과장된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안용복과 독도 영유권을 억지로 떼어놓기 위해 만들어 낸 꾀변에 불과할 뿐이다.

안용복이 만약에 성호 이익의 글에 나오는 것처럼 한문이나 일본어에 능통했다면 그가 갔던 곳을 에도로 착각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가 받은 문서를 관백의 서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언어적 경험에 의해 그가 인식하고 있던 것을 그대로 진술했을 뿐이다.

독도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나 학생은 물론 관련 공무원들에게도 일독을 권할 만한 책이라 감히 추천한다.